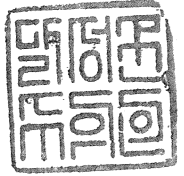


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89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1. 10. 6.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- 가. 테크노폴리스지구 및 국가산업단지 등 도시지역이 확장 개발되고
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
나. 악취를 많이 발생시키는 돼지·개·닭·오리·메추리의 가축사육
제한을 확대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
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일부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범위 확대
- 오염부하가 많은 돼지·개·닭·오리·메추리 사육 제한 거리
500m → 1km 이내의 지역으로 확대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(※ 붙임)
1)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
2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본예산(안) 편성 요구
-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및 고시 용역비 : 약 30백만 원

다. 기타

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(2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 : 2021. 8. 24. ~ 9. 14.(21일간)

(나) 예고결과 : 2021. 9. 13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접수(5건)

- 의견내용 : 사육제한 지정범위 확대 시 일부축종에 소를 포함하기를 바람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】

달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

□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범위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
 - 제36조의 도시지역 중 주거·상업·공업지역 및 주거·상업·공업지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(다만, 돼지·개·닭·오리·메추리는 1,000m 이내)
 - 제36조의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(자연·생산녹지)내 주거밀집지역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(다만, 돼지·개·닭·오리·메추리는 1,000m 이내)
 - 제36조의 녹지지역(보전녹지), 관리지역, 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
 - 제37조의 취락지구 및 지구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(다만, 돼지·개·닭·오리·메추리는 1,000m 이내)
- 「수도법」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
- 「하천법」 제3조에 따른 하천구역(국가 및 지방하천)
- 「소하천정비법」 제2조에 따른 소하천구역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가축사육의 제한 등) ① 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으며,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~ 5. (생 략) 【별 표】 달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·고시 내역 ○ 지정면적 : 338.56km² ○ 지정범위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· 제36조의 도시지역 중 주거·상업·공업 지역 및 <u>지역</u>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· 제36조의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(자연 생산 녹지)내 주거밀집지역 및 지역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<u>지역</u> (이하 생략) · 제37조의 취락지구 및 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(이하 생략) · 「소하천정비법」 제3조에 따른 소하천구역 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면적 내역 (생 략) ☐ 가축사육 제한구역 총괄도 (생 략)	제3조(가축사육의 제한 등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5. (현행과 같음) 【별 표】 달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☐ <u>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범위</u> ○ <삭 제> ○ <삭 제>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· 제36조의 도시지역 중 주거·상업·공업 지역 및 <u>주거·상업·공업지역</u>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(<u>다만, 돼지·개·닭·오리·메추리는 1,000m 이내</u>) · 제36조의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(자연 생산 녹지)내 주거밀집지역 및 <u>주거밀집지역</u>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(<u>다만, 돼지·개·닭·오리·메추리는 1,000m 이내</u>) (현행과 같음) · 제37조의 취락지구 및 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(<u>다만, 돼지·개·닭·오리·메추리는 1,000m 이내</u>) (현행과 같음) · 「소하천정비법」 제2조에 따른 소하천구역 ☐ <삭 제> ☐ <삭 제>

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8조(가축사육의 제한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·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·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
2. 「수도법」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,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
3.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, 「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, 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, 「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수변구역
4.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
5.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·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

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(危害)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·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·고시한 구역(이하 “가축사육제한구역”이라 한다)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,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,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.

⑤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

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·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.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36조(용도지역의 지정) ①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.

1. 도시지역 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.

가. 주거지역 : 거주와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

나. 상업지역 :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

다. 공업지역 :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

라. 녹지지역 : 자연환경·농지 및 산림의 보호, 보건위생,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

2. 관리지역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.

가. 보전관리지역 : 자연환경 보호, 산림 보호, 수질오염 방지,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,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

나. 생산관리지역 : 농업·임업·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,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

다. 계획관리지역 :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·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·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

3. 농림지역

4. 자연환경보전지역